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9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임광현·김정호·정진욱

김남희 • 최기상 • 김태년

오기형 · 정태호 · 박민규

박홍배 • 강준현 • 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原)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

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5(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① 내국 법인에 「소득세법」 제16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 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 례) 제1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0조의5(금융투자상품으로부
	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6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등을 국
	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 지
	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
	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